

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위탁운영 관리계획

- 공무원의 쓰레기봉투 판매시 현금취급 방지로 횡령·유용 등 비리 발생을 사전 차단키 위하여 벤치마킹(Bench Marking)을 통한 경영혁신 과제로 쓰레기봉투 판매 위탁 운영을 추진함
- 2000. 1. 22일자로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동조례 제8조의2(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)에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추진코자 함

□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량

(단위:천매,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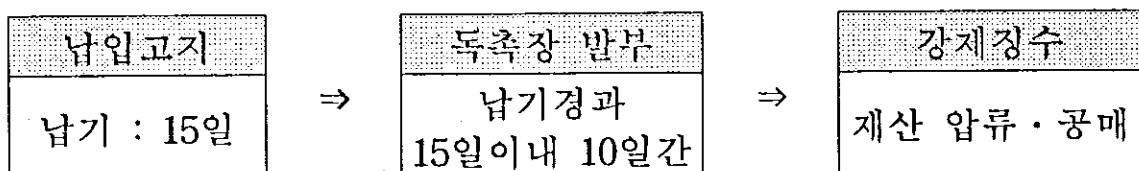
구 분	제작량	판매량	
		매수	금액
'95	4,946	4,324	1,134,818
'96	3,170	2,888	1,088,791
'97	4,202	2,652	868,788
'98	2,035	2,446	809,057
'99.	853.6	2,596	921,234

□ 운영 실태

○ 쓰레기 봉투 판매 처리 체계

- 시 : 봉투제작(읍면동에 공급), 판매대금 징수결정
- 읍면동 : 봉투 보관 및 소매상(일반상점 등)판매, 수불부 관리, 판매대금 고지, 체납액 관리
- 소매상(일반상점 등) : 봉투보관 및 수요자 판매, 대금 금융기관 납부

○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징수 절차



※ 운영비 16,457천원

- 인건비(기능10등급 8호봉기준) : 14,547천원(기본급5,838, 상여금4,621, 기타수당4,088)

- 차량운영비(소형화물차) : 1,910천원

□ 기대효과

- 청소담당 공무원의 과중업무 해소 및 능률성 제고로 질높은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
- ※ 현재 읍면동별 환경미화원 1명이 내근하여 쓰레기봉투 판매·대형폐기물수거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음
- 공무원의 현금취급 방지로 판매대금 횡령·유용 등 비리발생 소지 차단으로 청소행정의 투명성 제고
- 판매업자가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을 오가는 불편을 해소하여 청소행정의 신뢰도 제고

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

제8조의2(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) ①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파주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쓰레기봉투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·면·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

2. 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

3. 기타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위·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

2. 쓰레기봉투의 보관·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

3. 쓰레기봉투의 판매대금의 수납·이체방법,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

4.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

5. 업무 위·수탁에 따른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업무의 위·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③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봉투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